[붙임]

2026. 12. 23. 실시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
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 등 안내

1. 사직해야 하는 자

가. 입후보예정 체육단체 상임 임원 및 직원

❍ 관련 규정:「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제16조 제7항

「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 제16조(후보자의 자격)

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단체의 **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** 다만, 재선거등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이 경우, 소속 체육단체에 사직서가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

❍ 사직대상: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**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**

❍ 사직기한: **2026. 11. 18.(선거일전 35일)까지**

※ 소속 체육단체에 사직서가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.

나. 입후보예정 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장·지방의회의원 등

❍ 관련 규정:「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제16조 제1항

「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 제16조(후보자의 자격)

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1. 정관 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(단,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)
2.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3조의2(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)에 해당하는 **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**
3. **국회의원**

❍ 사직대상: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**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, 지방의회의원, 국회의원**

❍ 사직기한: **2026. 12. 9.(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)까지**

2.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

가. 관련 규정: 「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 제16조 제2항

「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 제16조(후보자의 자격)

② 체육단체("체육단체"란 대한체육회,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, 회원 시·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. 이하에서 이와 같다.)의 **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(이하 "체육단체 비상임 임원"이라 한다.)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5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(별지 제6호 서식)으로 제출**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선거등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제출대상: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

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

다. 제출기한: 2026. 11. 18.(선거일전 35일)까지

라. 제출사항: 후보자등록 의사 표명서

(덧붙임) [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]

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

성　　명:

생년월일:

위 본인은 민선3기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.

※ 관련 신분상의 변화

- 단체장 :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
- (단체장 제외)비상임 임원 :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 불가

2026년　　월　　일

성명　　(서명)

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귀중

첨부자료: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